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(조경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398 발의연월일: 2025. 3. 27.

발 의 자:조경태·곽규택·서천호

고동진 · 김예지 · 백종헌

서범수 · 서명옥 · 박성훈

김상욱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·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즉 직장 내 괴롭 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럼에도 현실에서는 현행법상의 미비점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에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추가하고, 직장 내 괴롭힘을 하는 사용자 및 근로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76조의2, 제76조의3 및 제116조).

법률 제 호

###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근로기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6조의2 중 "고통을"을 "고통 및 피해를"로 한다.

제76조의3제6항 중 "해고나"를 "해고나 신체적·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주는 행위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⑧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기구 를 구성할 수 있다.

제116조제1항 중 "가"를 "또는 근로자가"로, "1천만원"을 "3천만원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	제76조의2(직장 내 괴롭힘의 금
지)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	ス])
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	
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	
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	
신체적·정신적 <u>고통을</u> 주거나	<u>고통 및 피해를</u> -
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	
(이하 "직장 내 괴롭힘"이라 한	
다)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	
	<u>.</u>
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	제76조의3(직장 내 괴롭힘 발생
시 조치) ① ~ ⑤ (생 략)	시 조치) ① ~ ⑤ (현행과 같
	승)
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	6
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	
피해근로자등에게 <u>해고나</u> 그	<u>해고나 신체</u>
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	적ㆍ정신적 고통 및 피해를 주
아니 된다.	<u>는 행위</u>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⑧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직
	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
	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

제116조(과태료) ① 사용자(사용 기자의 「민법」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) 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<u>1천</u>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·③ (생 략)

i	<u>=</u>	대	통령	형령	<u>0</u>	로	ろ	히	는	비	-에
<u>r</u>	다리	}	조시	-フ] -	구.	를	구	성	할	수	있
Ţ	<u> </u>										
제1	16	조(	과티	개료	_)	1					
-											
_											
_											
_											
_	<u>또</u>	느	근	로ス	<b>小</b> フ	<u>'}</u>					
_										5	<u> 천</u>
<u>ן</u>	만원	<u>]</u>									
_											
	2) •	3	( द्	현 행	괴	- 깉	<b>같음</b>	-)			